「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2020 겨울): 295-319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4 (2019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3.4.1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박 병 식

국문요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설립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을 조사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례내용이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내용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과 인식제고의 적절성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의견 조사한 결과 운영과정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균 2.75점으로 중간값 3.00에 미달하여 집행사업의 성과 관리와 사후 평가가 보완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크게 요청되고 있고, 인식제고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균 2.97점으로 중간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에 있어 원전시설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 활동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 운영과정 분석모형, 원전수용성

Ⅰ. 서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부터 원전 설치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지역의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해 시행되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15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h당 0.5원에서 1원으로 올라 2018년도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는 215억원이다.[1)]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필요재원 확보와 소방시설 및 오물처리시설,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세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된다. 이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보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 35%, 기초자치단체 65%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집행된다.

상차원으로 부과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상북도는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에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주시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에 지역자원시설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실제 운영과정을 보면 목적세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희종, 2017).

원전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송해룡·김원제, 2012; 왕재선·김서용, 2013; 김대중 등, 2013; 이민재 등, 2014; 임다희 등 2016; Tanaka, 2004; de Groot & Steg, 2010; de Groot et al., 2013; Visschers & Siegrist, 2013; Besley & Oh, 2014; Tsujikawa et al., 2016; Vainio et al., 2017)을 보면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된 인지된 편익이 원자력 수용성에 매우 큰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원전지역 지원사업들은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원전 지원사업들은 지역자원시설세과 기금지원사업 및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은 자체적인 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원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왕재선·김서용, 2013, 박병식 외, 2017).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원자원발전지역 자원시설세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선원, 2003; 대구경북연구원, 2007; 최성두, 2009; 손진상, 2014; 김희종, 2017; 경상북도, 2018).

본 연구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의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이론적 고찰과 법리적 실태를 파악하고, 경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실태를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원자력발전 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분석

1. 원자력발전 지원사업의 정의

원자력발전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제141조(지역자원시설세)와 시행령,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례, 전기사업법 제49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사업계획수립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지원사업[2)]과 법 제13조의2에 의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자기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있다, 발주법 제10조의 기금지원사업 중에서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의 분야는 공공시설사업(기반시설, 공공건축물 등), 소득증대사업(전복치패사업, 공동농기계구입 등),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융자사업), 육영사업(학교지원사업),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41조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와 특징

1)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11개 지방세 중 하나로 구분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신성현·정준금, 2019).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道)세이자 목적세이다. 목

2) 기금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본지원사업은 기금지원사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다.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용어의 사용을 등위개념으로 구분한다면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기본지원사업을 기금지원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기금지원사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지원사업은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반면,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기타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에 비해 예산규모가 매우 작아, 실질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이 기금지원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자체나 사업자의 실무자들은 실무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을 기금지원사업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법 지원사업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사업자 자체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재원에 따라 사업의 모든 과정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기본지원사업을 기금지원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적세는 징세 수입이 특정한 지출 목적에 결부되어 있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세와 차이가 있다. 목적세가 적용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주민과 관련된 일반 복지사업이 아니라, 일부 지역 또는 특정한 범위의 주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과 자주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1992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신설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 기본법 제정 등 지방세제의 선진화 과정에서 2세목이 통합되어 지역자원시설세로 설치되었다(이상훈·김진하, 2012.).

지역자원시설세는 2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과세자주권적 성격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세수 면에서는 미미하나,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세목의 설치근거 기준과 과세대상, 세율 등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과세여부 및 탄력세율 적용 등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 제한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환경세적 성격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이 환경오염, 공해, 자연경관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므로 원인자 부담원칙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적 관점과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물 이용,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관점에서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필헌, 2019).

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내용과 특징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용청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으로 총 7개로 분류된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으로 정한 목적세로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도, 입지지역 선정 어려움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며, 납세의무자는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전력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화력발전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도 및 입지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논리로 과세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원자력발전소는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므로 후생손실 보전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 응익과세 측면에서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소재지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희생의 토대위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과세가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교통, 환경 등의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정부분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수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10㎥당 2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상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넷째,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지역주민들이 보상금 개념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불투명 등 재원낭비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상적인 세입세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세로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지역개발세법 상 원자력발전 관련 과세 근거는 하나는 '지역에 핵물질 오염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며, 다른 하나는 '원전주변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개발 저해효과에 대한 보상'이다. 이와같은 근거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3)]

3. 지역자원시설세의 선행연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지역자원시설세 자체에 대한 연구와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에 관한 연구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어졌다.

지역자원시설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법리적인 측면이나 존재론적 측면의 타당성 연구가 제시되어져 왔다(김필헌 외, 2018; 박병희, 2015; 구균철 외, 2017).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발전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된 편익이 얼마나 발전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지를 연구하였으며,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공된 인지된 편익이 원자력 수용성에 매우 큰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송해룡·김원제, 2012; 왕재선·김서용, 2013; 김대중 등, 2013; 이민재 등, 2014; 임다희 등 2016; Tanaka, 2004; de Groot & Steg, 2009; de Groot et al.,2013; Visschers & Siegrist, 2013; Besley & Oh, 2014; Tsujikawa et al., 2016; Vainio et al., 2017).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 및 세율조정에 대한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설립된 각종 발전시설물 및 지역자원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연구들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향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만한 대상으로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 등을 설정하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또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석유류관련시설에 대한 과세신설을 제안하고, 수력발전을 발전용수 기준으로 과세할 때 과세되지 않았던 양수발전도 발전량 기준으로 과세하여 과세하도록 제시하고 있다(유태현, 2017), 수력발전의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세율결정에는 기존의 조세수입을 유지하는 수준의 세율로서 KW당 약 2.7원을 제안하고, 외부불경제의 크기를 감안할 때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세율은 수력발전보다 더 높게 책정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김행선, 2016; 김필헌, 2019; 유태현, 2017; 유영성 외, 2017; 이장욱 외, 2018; 이상훈·김진하, 2012).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가 설립된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로 지역자원 시설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희종, 2017). 그러나 지역자원시설 주민들에 긍정적 이미지를

3)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부터 1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총규모는 164,769백만 원이다.

제공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방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김선원, 2003; 대구경북연구원, 2007; 최성두, 2009; 손진상, 2014; 경상북도, 2018; 박병식, 2019).

Ⅲ.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법령체계와 세출내용

1. 지역자원시설세의 법령 체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과징되는 조세인 목적세로서 특정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목적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 사업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방세법에서 제시하는 세출 사업을 크게 지역자원 보호·개발사업, 안전관리사업, 환경 보호·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지출사업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례는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례는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제정취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내용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원전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사업

<table>
<tr><th>지방세법</th><th colspan="6">1) 지역자원 보호·개발, 2) 안전관리, 3) 환경 보호·개선,
4) 지역균형개발, 5)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th></tr>
<tr><td rowspan="2">광역-조례</td><td colspan="2">경북도</td><td>울산시</td><td>전라남도</td><td>부산시</td></tr>
<tr><td colspan="2">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에너지육성 사업
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 대책에 관한 사업
3.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4.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6.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7.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8.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금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td><td>1.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
2.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홍보·교육·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4. 에너지 절약사업 및 에너지관련 신산업 육성
5.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6. 지하수와 지하자원 개발·보급과 지원사업
7.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 및 폐광의 원상복구사업
8.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1.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영광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2.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
3.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
4.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
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에너지 절약 사업
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 제14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3.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5.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지원
6.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td></tr>
<tr><td rowspan="2">기초-조례</td><td>경주시</td><td>울진군</td><td>울주군</td><td>영광군</td><td>기장군</td></tr>
<tr><td>1.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2.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4. 도 자체 사업 중 시에 보조되는 사업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7.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사업
8.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위탁 및 보조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td><td>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2.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5. 도 자체 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td><td>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2.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 장학사업
3.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4.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2. 국·도비 등 이전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도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
5. 전기요금 보조사업
6. 그 밖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td><td>1. 군 지역개발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
2.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5. 시 자체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
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td></tr>
</table>

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규모

2018년도 경주시의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예산은 215억원이었으나, 2019년도 세출예산은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4] 경주시의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항목을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2018년에 146억원(67.38%)이고 2019년도에 120억원(78.64%)으로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지역 개발 추진사업은 2018년 26.59억원(12.36%)에서 2019년에 17.6억원(11.53%)으로 배정되었고, 세부사업인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 및 원자력연구개발 및 기반확충사업 지원 등의 원자력클러스터조성추진에는 2018년도에 43.6억원(20.26%)에서 2019년도에 14.94억원(9.79%)를 배정하고 있다.

〈표 2〉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현황

(단위: 백만 원)

실국,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2019년 예산액	2019년 비율	2018년 예산액	2018년 비율	비교 증감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15,259	100.00%	21,520	100.00%	△6,260
원자력정책과	15,259	100.00%	21,520	100.00%	△6,260
원자력발전지역개발	3,255	21.33%	7,020	32.62%	△3,764
원자력발전지역개발추진	1,760	11.53%	2,659	12.36%	△899
원자력주변지역지원	310	2.03%	455	2.11%	△144
예비비	1,449	9.50%	2,204	10.24%	△754
원자력클러스터조성추진(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494	9.79%	4,360	20.26%	△2,865
원전현장인력양성원운영	1,351	8.85%	4,239	19.70%	△2,888
원자력연구개발및기반확충사업지원	50	0.33%	100	0.46%	△50
에너지과학연구단지및원해연유치추진	62	0.41%	20	0.09%	42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추진	30	0.20%	0	0.00%	30
재무활동	12,004	78.67%	14,500	67.38%	△2,495
내부거래지출	12,000	78.64%	14,500	67.38%	△2,500
내부거래지출	12,000	78.64%	14,500	67.38%	△2,500
보전지출	4.24	0.28%	0	0.00%	0
보전지출	4.24	0.28%	0	0.00%	0

자료: 경주시 '2019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재정리

경주시의 2019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부 세출 편성항목을 보면 내부거래지출 편성항목에 강변로(첨성로~나정로)개설, 황성공원사유지 매입,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4) 2018년 10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18년 8월 기준 396억9천만원으로 2017년 515억3천만원보다 118억원 줄었고, 2018년 8월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도가 139억원으로 2017년보다 41억원, 경주는 101억원으로 50억, 울진은 157억원으로 27억원 각각 줄었다(연합뉴스, 2018.10.24.)

반영하고 있다. 원자력주변지역지원사업에 원전주변 주민교육 홍보물 제작, 원전주변 학생교육 홍보물 제작, 원전주변 주민홍보 달력구입, 생활방사선 감시 사업비(분석 및 시료 구입비), 원자력 관련 회의 운영비, 원전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방사선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방사선 측정기 교정료,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동선량률 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홈페이지 및 앱 유지보수비, 무전기(TRS) 유지보수비, 가두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일반관리비로 배정하였고, 주민보호장구 보관함, 라돈 측정기 구입, 환경방사선감시기 구입, 환경방사선 보조검출기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클러스터조성추진 사업으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 원자력연구개발 및 기반 확충사업 지원, 에너지과학연구단지 및 원해연 유치 추진,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Ⅳ.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실태 분석

1.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실태 분석 모형

1) 운영실태 분석의 필요성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산수립과 집행과 성과에 대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Daniel Crause, 1998; GAO, 2005; 이윤식·윤종현, 2014; 박병식 외, 2017), 이 분석모형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조사[5]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의 적실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손진상, 2009; 최성두, 2009; 김쾌희 외, 2012; 손진상, 2014; 홍준현 외, 2006; 김근식, 2009; 채경석, 2008).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의 분석모형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사업, 운영과정, 효과의 세 측면으로 설정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부사업별 중요도와 적합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상황을 분석하고,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 운영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며, 효과에 대해서는 지원자원시설세가 추구하는 안전성 인식제고, 신뢰성 제고, 수용성 제고에 대한 인식도 증진효과를 분석한다.

5)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실태 분석에 있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책관계자의 세 그룹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결과는 전체적인 의견과 각 집단별 의견을 같이 제시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이 객관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2) 분석항목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부 사업은 크게 안전관리, 공공시설, 지역자원개발, 공공시설, 기타사업으로 분류된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사업은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생활방사선 감시 사업비, 방사능 방재요원 원자력 안전 체험교육, 방사선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원전지역 재난관리업무 추진, 방사능방재 업무 추진, 해외 원전 및 방폐장 관련 선진시설 견학, 원전주변 주민교육 등)이며, 공공시설1사업은 원전 현장 인력양성원 운영에 관련된 사업(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사업 지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등)이다. 지역자원개발사업은 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반확충 지원사업(원자력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 포럼 개최, 해오름동맹 원자력 정책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 등)이며, 공공시설2사업은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추진사업(유치전략 자료 유인, 연구단지 유치 전략 홍보, 유치관련 행사 임차료, 연구기관 유치 관련 업무협의 등)이고, 기타사업은 내부거래지출로 이루어지는 사업(국가지정문화재보수, 불국스포츠센터건립, 국민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지급, 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지원 등)이다.

〈표 3〉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항목

조사항목	조사 내용
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부 사업별 조사	- 세부 사업별 중요도 - 세부 사업별 적합도
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집행사업의 적절한 설명 - 주민들의 의견수렴 적절성 - 집행사업 추진항목의 적절성 - 집행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 집행사업 점검절차의 적절성 - 집행사업 성과관리의 적절성 - 집행사업 사후평가의 적절성
3) 원전시설에 대한 인식제고의 적절성	- 안전성 인식제고의 적절성 - 신뢰성 제고의 적절성 - 수용성 제고의 적절성
4) 응답자의 일반 사항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 대한 운영과정을 분석해 보면 집행사업의 소개, 주민들의 의견수렴, 집행사업의 추진항목, 집행사업의 추진과정, 집행사업의 점검절차, 집행사업의 성과관리, 집행사업 사후평가의 7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한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의 주민인식도 제고에 대한 기여상태를 보면 크게 안전성 인식제고, 신뢰성 제고, 수용성 제고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인식제고 상태를 분석한다.

3) 조사 대상자 선발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표본추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모집단을 전문가그룹, 이해관계자그룹, 정책관련그룹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모집단을 보면 전문가그룹은 경주지역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계, 원자력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관계자그룹은 경주 원전지역 주민단체와 원전관련 시민단체, 지역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관련자그룹은 경주시 원전관련 정책실무자, 경주시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6].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선발은 정책관련자 그룹은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 경주시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 30명을 선발하였고, 전문가그룹은 한수원 임직원 및 연구직 직원과 학계 중 회계 및 행정학 전공분야 교수를 중심으로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이해관계자그룹은 원전관련 시민단체, 지역발전협의회, 원전감시센터 등의 단체와 지역 사회단체들 중에서 60명을 선발하였다.

4) 조사기관과 응답자의 인적사항

조사기간은 2019년 6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조사방법은 배포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방법과 면접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응답은 Likert방식에 의한 5점 척도 설문조사와 개방형 설문조사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정책관련자 30명, 전문가 40명, 이해관계자 60명의 총 130명의 표본 중에서 조사응답자는 111명이 응답하여 전체 응답율은 85%이다.

〈표 4〉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빈도	퍼센트(%)	연령	빈도	퍼센트(%)
남	86	77.5	20대	2	1.8
여	25	22.5	30대	21	18.9
합계	111	100.0	40대	39	35.1
직업	빈도	퍼센트(%)	50대	43	38.7
지방의회의원	10	9.0	60세이상	6	5.4
정책집행담당자	16	14.4	합계	111	100.0
원전관련기관임직원	19	17.1	거주기간	빈도	퍼센트(%)
전문직	8	7.2	10년미만	25	22.5
연구진	4	3.6	10년이상 20년미만	24	21.6
원전관련 사회단체 임직원	3	2.7	20년이상 30년미만	19	17.1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22	19.8	30년이상 40년미만	15	13.5
기타(지역사회 이장 및 발전협의회)	29	26.1	40년이상	28	25.2
합계	111	100.0	전체	111	100.0

6) 경주지역 일반시민들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이해관계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과 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 많은 시민들이 시설세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없어 왜곡될 수 있는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배재하도록 한다.

2. 조사자료 분석

조사대상자에 대해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해하여 응답을 받았고, 추가적인 의견을 개방형으로 수렴하였다. 자료분석은 응답내용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 집단별 IPA분석을 실시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운영과정의 적절성과 인지도 제고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부 사업별 인식차이 분석

(1) 평균차이 검증

2019년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부 사업별 편성항목에 대해 사업별 중요도와「지역자원시설세」목적의 적합도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사업의 중요도와 적합도가 평균 3점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고 있다.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 사업은 안전관리 영역으로 지역의 정책집행자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이 원자력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모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창수. 2019).

사업별 순위를 보면 원자력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안전관리 사업을 가장 중요하고 적합하게 보고 있고, 다음으로 원자력연구단지 유치추진의 공공시설2사업과 지역자원개발 사업, 원전현장 인력 양성원 운영과 같은 공공시설1사업, 기타 사업의 순으로 중요도와 적합도를 인식하고 있다.

그룹별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부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적합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관련자(입안자 및 실무자)그룹은 안전관리영역(4.00)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공시설유치(4.00)를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영역(3.93)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자원개발(3.90)을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자력관련 전문가그룹은 첫째, 안전관리영역을 가장 중요(4.07)하고 적합(4.04)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둘째,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추진과 같은 공공시설 부문이 중요(3.86)하고 적합(3.79)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그룹은 첫째,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과 같은 안전관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3.67)와 적합도(3.39)가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지역자원개발영역에 중요도(3.24)와 적합도(3.00)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역은 공공시설1(원전 현장 인력양성원 운영 등)사업의 적합도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 비하여 정책관련집단이 보다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개발 영역(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반확충 사업지원)의 적합도에서 이해관계자집단과 달리 정책관련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보다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5〉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 세부사업 중요도&적합도의 평균 비교검증

영역	세부사업	항목	그룹	평균값		표준편차	분산 동질성 검증		Anova검증		순위
				그룹	전체		Levene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안전관리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 (생활방사선 감시 사업비, 방사능 방재요원 원자력 안전 체험교육, 방사선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원전지역 재난관리업무 추진, 방사능방재 업무 추진, 해외 원전 및 방폐장 관련 선진시설 견학, 원전주변 주민교육 등)	중요도	정책관련	4.00	3.86	1.165	5.471	0.005	1.127	0.328	1
			전문가	4.07		1.120					1
			이해관계자	3.67		1.454					1
		적합도	정책관련	3.79	3.66	1.146	2.671	0.074	2.837	0.063	4
			전문가	4.04		1.105					1
			이해관계자	3.39		1.309					1
공공시설	원전 현장 인력양성원 운영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사업 지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등)	중요도	정책관련	3.72	3.41	1.192	5.315	0.006	2.423	0.093	5
			전문가	3.61		0.994					4
			이해관계자	3.13		1.480					3
		적합도	정책관련	3.76	3.30	1.244	2.060	0.132	4.832	0.010	5
			전문가	3.54		0.999					3
			이해관계자	2.93		1.372					3
지역자원개발	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반확충 사업 지원 (원자력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 포럼 개최, 해오름동맹 원자력 정책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 등)	중요도	정책관련	3.76	3.49	1.091	4.348	0.015	2.079	0.130	4
			전문가	3.68		0.983					3
			이해관계자	3.24		1.427					2
		적합도	정책관련	3.90	3.37	1.175	1.026	0.362	5.480	0.005	2
			전문가	3.54		0.999					3
			이해관계자	3.00		1.332					2
공공시설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추진 (유치전략 자료 유인, 연구단지 유치 전략 홍보, 유치관련 행사 임차료, 연구기관 유치 관련 업무협의 등)	중요도	정책관련	3.93	3.49	0.998	12.409	0.000	5.398	0.006	2
			전문가	3.86		1.113					2
			이해관계자	3.06		1.595					4
		적합도	정책관련	4.00	3.42	1.035	3.409	0.037	8.658	0.000	1
			전문가	3.79		1.134					2
			이해관계자	2.93		1.385					3
기타사업	내부거래지출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불국스포츠센터건립, 국민기초생활 급여, 기초연금지급,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등)	중요도	정책관련	3.90	3.34	0.860	8.857	0.000	4.017	0.021	3
			전문가	3.32		1.278					5
			이해관계자	3.06		1.472					4
		적합도	정책관련	3.83	3.20	0.928	3.454	0.035	5.319	0.006	3
			전문가	3.11		1.315					5
			이해관계자	2.91		1.336					5
전체영역 평균		중요도	정책관련	3.8621			3.5153				
			전문가	3.7071							
			이해관계자	3.2296							
		적합도	정책관련	3.8552			3.3892				
			전문가	3.6000							
			이해관계자	3.0296							

(2) IPA분석

각 집단별 2019년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적합도를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우선하여야 할 영역을 중요도 y축에 두었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적합도를 x축에 두어 IPA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정책관련 집단의 IPA분석결과를 보면 제1사분면 영역(좋은 성과 지속유지)은 중요도와 적합도가 모두 높은 좋은 성과의 지속유지 영역이며, 여기에는 공공시설2(원자력연구단지 유치추진)의 사업이 해당되고 있으며, 제2사분면 영역 (노력집중화지향)영역은 중요도는 높으나 사업의 적합도가 낮은 '집중'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안전관리영역과 기타사업영역이 해당된다. 제3사분면 영역(낮은 우선순위 영역)은 중요도와 적합도가 모두 낮은 영역이며, 이 영역은 추가적인 노력이나 자원을 투자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으로서 여기서는 공공시설1(원전현장인력양성원)의 사업이 해당되며, 마지막 제4사분면 영역(과잉노력 영역)은 중요도는 낮은데 비해 적합도가 다소 높은 영역으로 이 영역은 투입되는 노력을 다른 분야에 투입할 것으로 권하는 영역으로 여기에서는 지역자원개발영역(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반확충 사업지원)사업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전문가 집단의 IPA분석결과를 보면 제1사분면 영역(좋은 성과 지속유지)은 안전관리영역과 공공시설2(원자력연구단지 유치추진)의 사업이 해당되며, 제2사분면 영역 (노력집중화지향)영역은 해당영역의 사업이 없고, 제3사분면 영역(낮은 우선순위 영역)은 공공시설1(원전현장인력양성원)의 사업과 지역자원개발(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반확충 사업지원)의 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이 해당된다.

끝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의 IPA분석결과를 보면 제1사분면 영역(좋은 성과 지속유지)은 안전관리영역의 사업이 해당되며, 제2사분면 영역(노력집중화지향)영역은 지역자원개발(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반확충 사업지원) 사업이 해당되며, 제3사분면 영역(낮은 우선순위 영역)은 공공시설1(원전현장인력양성원)의 사업, 공공시설2의 사업, 기타사업이 해당된다.

종합적으로 세 집단(정책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안전관리 영역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안전관리영역의 세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청된다.

〈그림 1〉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의 집단별 IPA 분석결과

정책 관련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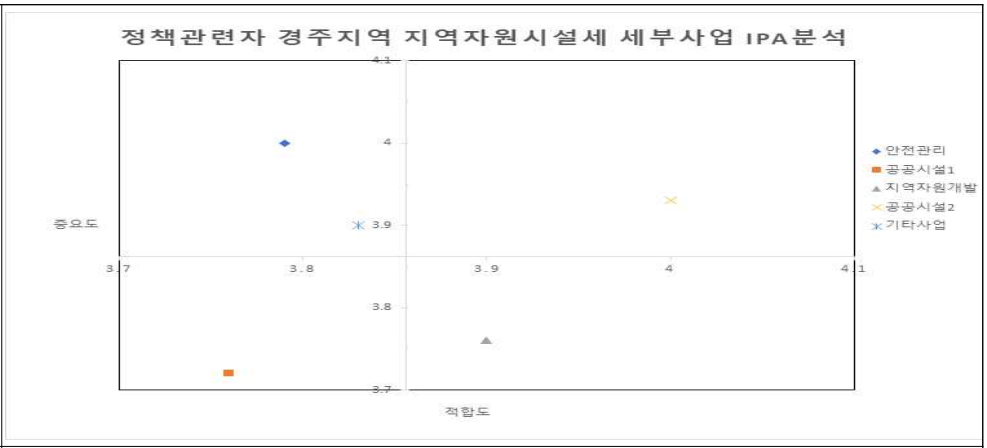
전문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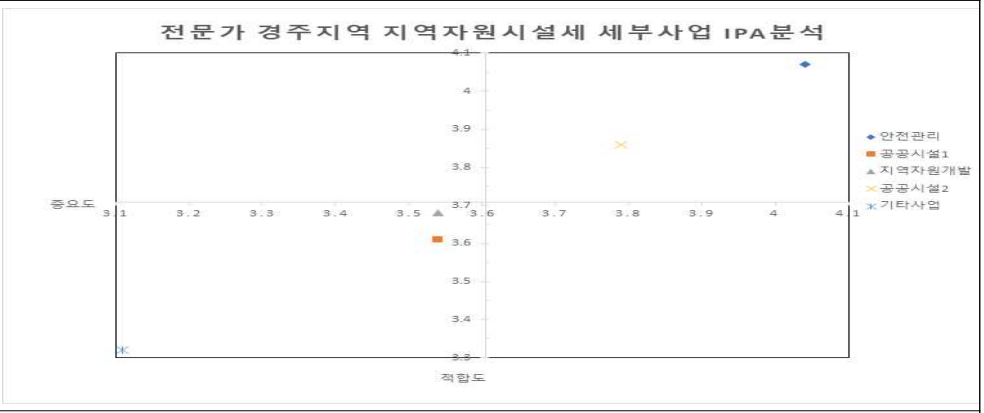
이해 관계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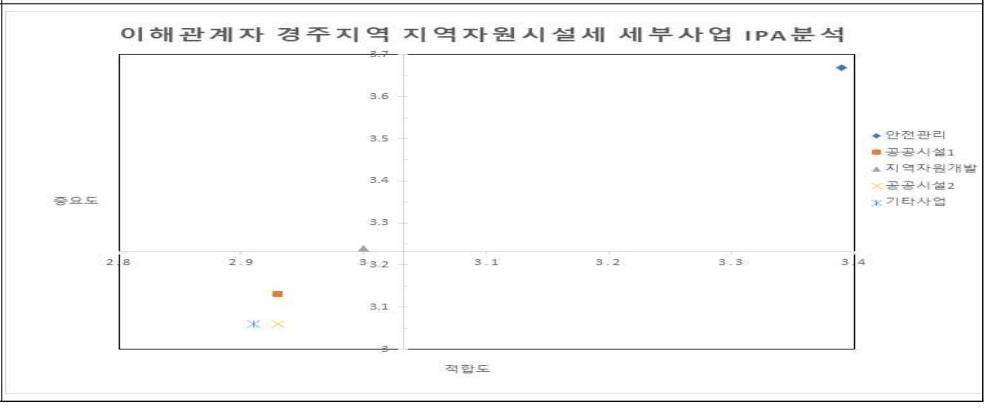

2)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운영의 적절성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경상북도에서 배분되는 시설세 금액(65%)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집행 후 경주시의회에 결산 승인을 받아 완료하였다.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75점으로 중간값 3.00점에 미달하여 응답자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장 낮은 운영과정은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의 성과 관리의 적절성은 2.63점이고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의 사후 평가의 적절성은 2.67점이며,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적절성은 2.69점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정책관련자가 생각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 운영에서 성과관리를 가장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다음으로 사후평가, 주민의견수렴, 점검절차, 추진과정을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성과관리를 가장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다음으로 사후평가 및 점검절차, 주민의견수렴, 추진과정의 순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끝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은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를 가장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다음으로 주민의견의 수렴, 점검절차, 집행사업의 설명, 추진항목구성 순으로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

응답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된 설문문항은 집행사업의 설명, 주민의견수렴, 집행사업의 성과관리 적절성, 집행사업의 사후 평가의 적절성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관계자들은 운영과정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운영과정의 적절성

설문항목	그룹	평균값		표준편차	분산 동질성 검증		Anova검증	
		그룹별	문항별		Levene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집행사업들은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62	2.85	1.178	3.070	0.051	11.167	0.000
	전문가	2.79		0.833				
	이해관계자	2.46		1.111				
집행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책관련	3.41	2.69	1.119	1.507	0.226	10.609	0.000
	전문가	2.71		0.937				
	이해관계자	2.30		1.075				
집행사업의 추진 항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52	2.86	1.022	5.243	0.007	8.8992	0.000
	전문가	2.89		0.786				
	이해관계자	2.50		1.161				
집행사업들의 추진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48	2.73	0.986	5.715	0.004	7.619	0.001
	전문가	2.75		0.799				
	이해관계자	2.52		1.240				
집행사업에 대한 점검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45	2.76	1.055	4.624	0.012	9.750	0.000
	전문가	2.68		0.723				
	이해관계자	2.43		1.109				
집행사업의 성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28	2.63	1.066	1.275	0.284	8.824	0.000
	전문가	2.64		0.870				
	이해관계자	2.28		1.089				
집행사업의 사후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38	2.67	1.015	2.421	0.094	9.991	0.000
	전문가	2.68		0.905				
	이해관계자	2.28		1.172				
전체 평균	정책관련	3.4483			2.7555			
	전문가	2.7347						
	이해관계자	2.3942						

3)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 인식제고의 적절성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추진에 따른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976점으로 중간값 3.00점에 미달하여 응답자들이 지역자원시설세사업에 따른 인식변화에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집행으로 인해 원전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 제고의 성과 적절성은 2.95점이며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인식 제고의 성과 적절성은 3.02점, 원전시설의 계속 운영에 대한 수용성 제고의 성과 적절성은 2.95점으로 적절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7〉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 따른 인식변화

설문항목	그룹	평균값		표준편차	분산 동질성 검증		Anova검증	
		그룹별	문항별		Levene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인식 제고의 성과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72	2.95	1.066	0.986	0.376	11.512	0.000
	전문가	2.93		0.979				
	이해관계자	2.56		1.093				
원전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 제고의 성과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66	3.02	1.045	0.188	0.829	7.448	0.001
	전문가	2.93		1.052				
	이해관계자	2.72		1.071				
원전시설의 계속 운영에 대한 수용성 제고의 성과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련	3.52	2.95	1.022	0.383	0.683	8.279	0.000
	전문가	3.11		0.994				
	이해관계자	2.57		1.057				
전체 평균	정책관련	3.6322			2.9760			
	전문가	2.9881						
	이해관계자	2.6173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와 정책관계자들은 수용성제고에서 모두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정책관계자는 안전성인식과 신뢰성 제고에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이해관계자들은 모든 문항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

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안 내용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지방세법과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명확한 법률 규정,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의 조례내용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에 맞게 법령과 조례의 보완이 요청된다.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제반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주시의 조례 개정이 요청된다. 또한 조례내용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설세 운영의 의견수렴, 시민소통과 홍보, 명확한 사업 수립,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성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자원시설세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의 2019년도 예산배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을 기타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안하여 경주시 예산수립에 있어 시설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 분야별 지역별 명확한 분배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수립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시설세 운영 방안수립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2. 운영상의 개선방안

지역자원시설세 운영과정에 대해 시민단체, 정책집행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75점으로 중간값 3.00에 미달하여 응답자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장 낮은 운영과정은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의 성과 관리의 적절성(2.63)이고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의 사후 평가의 적절성(2.67)이며,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적절성(2.69)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전체적으로 운영과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성과관리나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자들 간의 유의미한 응답차이는 정책집행자는 운영담당자 입장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반적인 반응으로 파악될 수 있다.

운영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집행사업 설명의 적절성(2.85점)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충분한 시민홍보와 공론화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의 구체적 사용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적절성(2.69)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예산배분의 원칙 설정, 기득권층과 이해관계자만이 아닌 다수의 많은 주민과의 주기적인 소통체널 마련, 나눠먹기식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등이 요청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의 추진 항목의 구성 적절성(2.86)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설세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 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 시민들이 중요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원자력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안전관리 사업, 원자력연구단지 유치추진의 공공시설 사업 추진, 다른 지역에서 중요시하는 방사능 방재인프라 확충과 같은 안전관리, 원전사고 대응인력 및 후속조치 역량 강화와 같은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같은 자원보전, 지역균형개발 강화의 균형발전 사업 추진,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입장을 극복하고 경주시내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추진항목을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들의 추진과정이 적절성(2.73)을 증진시키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소지역이기주의을 극복하고 지역균등 발전을 추진하고, 경주시가 지원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민참여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에 대한 점검절차 적절성(2.76)을 증진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와 결산절차가 있지만 사업별로 감리제도나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점검하여 시설세 사업들이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및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해 나간다.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의 성과 관리 적절성(2.63)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개선 향상, 중장기적인 랜드마크적 시설건립, 실질적인 주민복지향상, 주변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사업의 사후 평가 적절성(2.67)을 증진하기 위해 시설세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인식상의 개선방안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추진에 따른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976점으로 중간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집행으로 원전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 제고 성과의 적절성이 2.95로 약간 적절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인식 제고 성과의 적절성은 3.02로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이며, 원전시설의 계속 운영에 대한 수용성 제고 성과의 적절성은 2.95로 약간 적절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역의 안전관리, 균형발전, 공공시설 지원 등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지만, 소지역이기주의, 주민들과의 소통부재, 피해보상이라는 주민 인식 등으로 인해 안전 운영의 신뢰성과 계속운영의 수용성에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들 간의 유의미한 응답차이는 정책집행자는 원전시설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및 수용성 인식개선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단체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전시설의 수용성 인식개선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이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파악된다.

원전시설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추진에 있어 원전시

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와 원전시설에 대한 수용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원전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원전 위험발생 조기 점검시스템 구축, 원전시설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위험발생시의 대비 및 대피방안 홍보, 원전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세의 목적사업인 지역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안전사업추진으로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고도화,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홈페이지 구축, 방사능 방재 차량 운영, 방사능 방재계획 및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수립·운영, 방재시설 및 물품 확충, 방사능 방재 훈련 내실화, 방사능 방재 교육 체계화, 방사능 및 원자력 관련 전문인력 확보, 원전사고 시 후속조치 방안 마련 등이 요청된다. 원전시설의 계속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추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전력요금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제안 공모사업 및 지역 제안사업 선정·추진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부터 원전 설치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지역의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해 시행되었다.

조사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안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목적사업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세법에서 제정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세출 역시 지목적세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법령과 조례의 정비가 요청되고, 지역자원시설에 운영에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시설세 예산수립에 있어 시설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 분야별 지역별 명확한 분배원칙의 설정이 필요하고, 예산수립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시설세 운영 방안수립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충분한 시민홍보와 공론화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의 구체적 사용처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예산배분의 원칙 설정 등이 요청되며, 시설세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 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 등이 요구되고, 잘못된 관행과 소지역이기주의을 극복하고 지역균등 발전을 추진하며, 시설세 사업별로 감리제도나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활개선 향상과 실질적인 주민복지 향상의 성과를 제시하고, 시설세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원전 위험발생 조기 점검시스템 구축, 원전시설 운영에 있어 체계

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위험발생시의 대비 및 대피방안 홍보, 원전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사업들을 추진하고, 경방사선 감시시스템 고도화,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홈페이지 구축, 방사능 방재 차량 운영,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추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전력요금 지원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연구이고 경주지역에 한정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효과적 운영방안이 연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자원시설세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차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분석 및 다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구균철 외. (2017).「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평가모델 개발 및 과세 적정성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권영환. (2015).「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행선. (2016).「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현제·박명덕. (2017).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구: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ISSUE PAPER 17-19」, 2017

경상북도 예산안(2018), 전라남도 예산안(2018), 울산광역시 예산안(2018), 부산광역시예산안(2018).

김대중 등. (2013). 인지 및 감정요인이 원자력발전의 개인적·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원전 홍보바안 수립에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5): 214-238.

김서용·김선희. (2017), 원전지역주민의 원자력 수용성에서 지각된 편익의 조절효과 분석, 제31권 제4호: 215-242.

김선원. (200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원제. (2009).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및 요인 간 영향관계에 관한 탐색 연구: S-M-C-R-E 모델 적용을 통한 원자력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 (11): 80-123.

김창수. (2019).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2019 가을): 183-210.

김필헌. (2019).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평가. KILF Report, Vol.63.

김필헌 외. (2018).「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평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2019).「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검토 - 연료전지와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쾌희. (2012). 월성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 및 갈등 해소 방안. 한국지

리환경교육학회, 20 (20): 83-97.
김태훈. (2013). 원전의 사회적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PR 발전방안. 정부와 정책, 5(2): 29-50.
김쾌희·이상율. (2012).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 및 갈등 해소 방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83~97.
김희종. (2017).「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정책과제 2017-07.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대구경북연구원. (2007).「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의 효율적 집행방안」.
대외경제연구원. (2012).「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발전단가 검증위원회 결과분석 및 시사점」
박광배. (2007).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열린충남』, 2007: 106-123.
박병식 외. (2017).「원자력발전소 지역 지원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박병식. (2019). 원전지원사업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박병희. (2015).「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손진상. (2009).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과학기술법연구, 제14집 제2호.
손진상. (2014).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안암법학, 제44권: 283-315.
송상훈·류민정. (2011).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적 과세 방안. 정책연구, 1-106.
송재섭·최기호. (2018). 정치적 비용과 세무계획: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사용후 연료처분사례. 회계저널, 제27권 제4호: 115-144.
송해룡·김원제. (2012).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위험지각이 위험태도와 위험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38-248.
신성현·정준금. (2019).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사례분석: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정책을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2호(2019 여름): 71-96.
신윤창. (2009).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189-211.
왕재선·김서용. (20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396-424.
유영성 외. (2017).「조력발전의 사회적비용 추정 및 과세화 연구」. 경기연구원.
유태현. (2017). 석유류관련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43-160.
유태현. (2018). 지방세 신세원 확충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43-70.
유태현. (2017). 석유류관련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43-160.
이민재·정집섭·박기성. (2014). 원자력 발전의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명성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54: 253-279.
이민정·여형범. (2014).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2014-35.

이상훈·김진하. (201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 2012-02호
이윤식·윤종현. (2014). 시스템평가모형 기반의 정책평가 FRAME 개선 연구,「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4권 제1호: 1~20.
이장욱·서정섭·유태현. (2018). 재정분권화시대신세원발굴에관한연구: 유해화학물질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부과방안을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112호): 161~190.
이창훈 외. (2005).「신재생에너지전력 시장활성화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임다희·이소담·권기헌. (2016). 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원전입지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5(2): 245-281.
최성두. (2009).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 226.
최병호·이근재. (2014).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방안: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을 중심으로,「경제연구」, 제33권 제1호: 39~73.
최한수·홍우형. (2016).「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능식. (2015).「송·변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홈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합리화 방안. 네트워크포럼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행정안전부. (2018). 2018년도 지방세통계연감.
Besley, John C. & Oh, Sang-Hwa. (2014). The Impact of Accident Attention, Ideology, and Environmentalism on American Attitudes Toward Nuclear Energy. Risk Analysis, 35(5): 949-964.
de Groot, Judith I. M. & Steg, Linda. (2010). Morality and Nuclear Energy: Perceptions of Risks and Benefits, Personal Norms, and Willingness to Take Action Related to Nuclear Energy. Risk Analysis, 30(9): 1363-1373.
de Groot, Judith I. M., Steg. Linda & Poortinga, Wouter. (2013). Values, Perceived Risks and Benefits, and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Risk Analysis, 33(2): 307-317.
Daniel Crause. (1998).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upplier development: reactive and strategic processes. DR Krause, RB Handfield, TV Scannell -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European commission. (1997). Evaluating EU expenditure programmes.
GAO. (2005).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Definitions and Relationships.
OECD. (2015).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Action 1 Final Report. OECD Publishing.
Tanaka, Y. (2004). Major Psychological Factors Determining Public Acceptance of the Sitting of Nuclear Facilit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6): 1147-1165.
Tsujikawa, N. Tsuchida, S. & Shiotani. T. (2016). Chang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Japan Since the 2011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Risk Analysis, 360(1): 98-113.

Vainio, A., Paloniemi, R. & Varho, V. (2017). Weighing The Risks of Nuclear Energy and Climate Change: Trust in Different Information Sources, Perceived Risks, and Willingness to pay for Alternatives to Nuclear Power. Risk Analysis, 37(3): 557-569.

Visschers, V. H. & Siegrist, M. (2013). How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fluences Acceptance of Nuclear Power: Results of a Longitudinal Study before and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Risk Analysis, 33: 333-347.

박병식(朴柄植):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행정, 정책평가, 지역개발, 인사관리이다. 최근 저서는 '현대도시와 행정', '안전정책론', '같은 방향 다른행로?'가 있고, 논문으로는 '공기업의 CSR활동과 사회적 신뢰와의 관계분석',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 평가와 개선방안' 등이 있으며, 현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행정사례연구회장을 맡고 있다(parkbs@dongguk.ac.kr).

〈논문접수일: 2020. 1. 10 / 심사개시일: 2020. 1. 17 / 심사완료일: 2020. 2. 10〉

Abstract

Effectiv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Resource Tax: In the Focus on Gyeoungju City

Park, Byoung Sik

Although the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was introduced in 2006,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not systematically manag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stitutional aspects in order to find effective ways of operating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 the regulations of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local tax law.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s of local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results that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can sympathize with the local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opinion survey on the adequacy of the operation process and awareness raising of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the evaluation of the aspects of the operation process has averaged 2.75 points, which is below the median of 3.00. It is highly requested to compl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ex post evaluation of execution projects. And especially it should significantly improve opinions collection from residents. The evaluation on the aspect of raising awareness has averaged 2.97 points, which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ctivities for enhancing the reliability and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in the operation of regional resource facilities tax.

Key Words: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nuclear power generation, operational process analysis model,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